

화순군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기준은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u>군수는 법 제 58 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3”에 의한다.</u>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기준은 영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다.</u>

현행

[별표 3]

과태료부과기준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5조)			
가. 오수정화시설			
(1) 1일 처리용량 100m ³ 미만			
(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50% 미만인 경우	100	200	300
(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300	400	500
(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00% 이상 200% 미만인 경우	500	600	700
(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00% 이상인 경우	700	800	1,000
(2) 1일 처리용량 100m ³ 이상			
(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50% 미만인 경우	200	300	400
(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400	500	600
(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00% 이상 200% 미만인 경우	600	700	800
(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00% 이상인 경우	800	900	1,000
나. 정화조			
(1) 처리용량 10m ³ 미만	100	200	300
(2) 처리용량 10m ³ 이상	300	400	500
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			
(1)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0% 미만인 경우	100	200	300
(2)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	300	400	500
(3)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500	600	700
(4)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00% 이상인 경우	700	800	1,0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2.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가.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200	500	1,000
나. 정화조의 경우	100	200	500
3. 오수정화시설·정화조·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준공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을 사용한 자(법 제11조, 제26조)			
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한 경우			
(1)정화조·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200	200	200
(2)오수정화시설의 경우	300	300	300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1)정화조·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500	500	500
(2)오수정화시설의 경우	800	800	800
4.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 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방지사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발긴자(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제22조, 제27조)			
가.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500	500	500
나.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1,000	1,000	1,000
다.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800	800	800
5.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한자(법 제14조 제2항, 제28조 제2항)			
가.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용량 200m ³ 이상 정화조 또는 1일 처리용량 200m ³ 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은 반기별 1회 이상	100	200	500
(2) 1일 처리용량 5m ³ 이상인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은 연 1회 이상	100	200	5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나.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처리용량 10m ³ 미만인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	100	300	500
(2)처리용량 10m ³ 이상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300	300	1,000
다. 처리대상 인원 500인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1,000
6.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 위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 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1항)	500	700	1,000
7.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법 제24조 제4항)	300	500	800
8.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 관련 영업자(법 제35조 제4항)			
가.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	500	700	1,000
나. 직기에 분뇨를 치러하지 아니한 경우(천세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100	300	500
9.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관련 영업자 (법 제35조 제6항)	300	500	1,000
10. 기술관리의 선임 또는 개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 제2항)	300	500	1,000
11. 기술관리인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법 제42조 제3항)	300	500	1,000
12.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500	700	1,000
13.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자(법 제44조)	300	500	1,000
14. 휴업, 폐업 등의 신고를 아니한 분뇨관련 영업자 (법 제45조)	300	500	1,000
15.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46조 제1항)	300	500	1,000

-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인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 양도, 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4.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로 한다.
 5.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은 법 제24조 제4항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말한다.